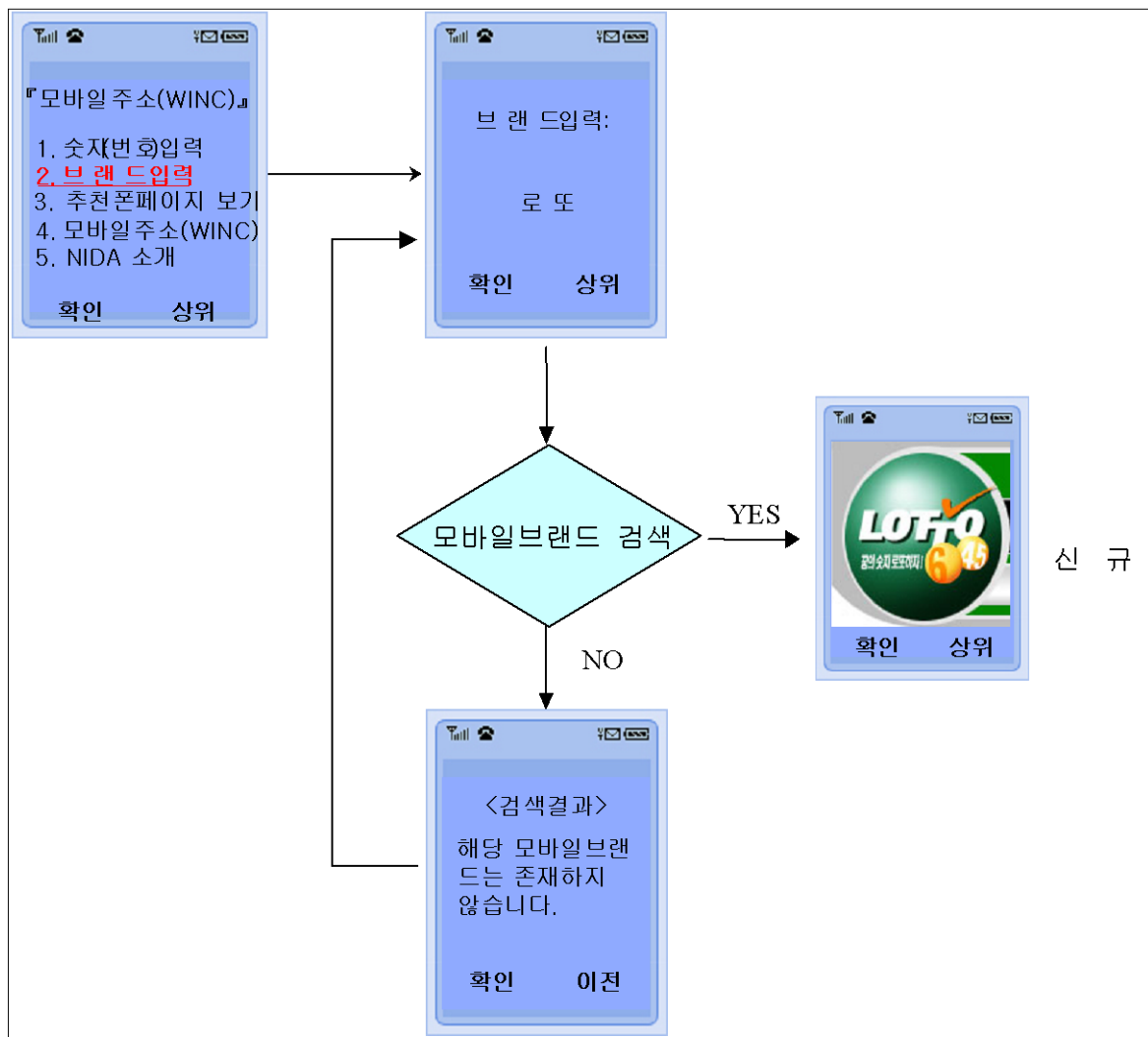


모바일브랜드(MobileBrand) 서비스 시행 지침

제정 2003. 06. 25
개정 2004. 08. 23
개정 2004. 11. 01
개정 2005. 07. 08

1. 개요

- 이용자가 입력한 키워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 콘텐츠로 바로 접속하며, 미등록되어 있는 경우 에러메시지를 출력하는 부가서비스



<서비스 개요도>

2. 모바일브랜드(MobileBrand) 구성 및 규격

- 반드시 영문자[A-Z][a-z], 숫자[0-9], 한글로 시작
- 2자리 이상 ~ 20자리이내
(단, 영문, 숫자 1 자 → 1자리, 한글 1자 → 2자리 처리)
- 특수기호(# , % , @ , / , & , * , : , ; , ' , ' , " , " 등)은 사용 불가
- 띄어쓰기 불가

3. 등록방안

- 기본 등록정책
 - 모바일브랜드는 모바일주소(WINC)를 소유한 등록자가 등록대행자의 웹에서 별도의 페이지를 통해 등록(중복 등록 불가)
 - 서비스 이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와 비속어는 유보어로 지정하여 등록을 제한하고, 한시적으로 등록을 유보함

<유보어 정책>

구분	주요내용
적용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서비스 시행초기 혼란을 방지하고, 향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글도메인의 2단계 공공도메인 후보에 해당하는 문자열○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비속한 어휘에 해당하는 문자열
적용방법	한글도메인의 유보어 정책 준용(www.rfc-kr.or.kr RFC-KR-144 참조)

- 서비스 시행에 따른 공공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공공기관명칭은 예약어로 지정하여 등록을 제한함

<예약어 정책>

구 분	주 요 내 용
적용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공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명칭 등은 등록을 제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행정기관(행정관청/의결/집행/감사/지방자치단체) - 입법기관(국회/지방자치의회) - 정부산하기관(정부투자기관/연구 및 비연구 출연기관) - 외국공관(대사관/영사관/국제기구) - 행정구역명, 사법기관, 국가명, 교육기관 등
적용방법	한글도메인의 예약어 정책 준용
사후조치	등록 후에도 해당기관에서 공식요청이 있을 경우, 이용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등록자에게 변경요청 통보 및 조치
조치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정유예기간(7일)을 두고 불응시 통보 후 삭제함 ○ 해당 용어는 예약어에 추가

※ 예약어와 유보어 중 비속어는 악의적인 목적의 이용자 방지를 위해 공개하지 않으며, 요청에 의해서만 열람 가능

○ 모바일브랜드 등록정책

- 서비스 개시 후에는 선접수 선처리에 의해 실시간 등록
- 모바일브랜드의 변경은 수시 가능

4. 분쟁발생시 조치 방안

- “모바일주소(WINC) 부가정보현행화 지침”에 따라 해결

5. 수수료 : 무료

6. 기타사항

- 비속어를 제외한 유보어는 향후 시장의 요구에 따라 등록유보를 해지 가능
- 단, 해지 시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유료 등록정책 검토 예정